

#### [서식 예]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#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신 청 인(원고) ㅇㅇ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신 청 취 지

- 1. 신청인(원고)과 피고 ○○○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○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■■■가 20○○. ○. ○.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■■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- 1. 신청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, 반대급부인 금 ○○○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,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, 그 부여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 법원사무관
  ■■■로부터 집행문부여의 거절처분을 받았습니다.
- 2. 그러나 위 법원 법원사무관 ■■■의 거절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



고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1. 판결정본(또는 화해조서정본)1통1. 변제공탁서1통1. 집행문부여신청서사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원고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제출법원	·집행문부여를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		
	·공증인 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		
	관할하는 지방법원		
│ │ 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사집행법 제34조
, – ,			민사집행법 제59조
불복절차	·특별항고(민사소송법 제449조, 민사집행법 제23조)		
및 기간	·집행문 부여의 소(민사집행법 제33조)		
म्रो क्ष	·인지액:○○○원(r	☞민사접수서류여	에 붙일 인지액 참조)
			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기 타			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. 집
	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		
	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		
	정으로 재판함(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, 제2항).		
	·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,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		
	로 봄.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		
	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		
	에 그 효력이 생김(민사집행법 제263조).		
	·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의 얻지 못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내어주기		
	를 거절한 경우에도 집행문 부여의 주체는 그 부여기관이므로 그 거절처분		
	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명령을 내리		
	지 않은 데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니다(대법원 1967. 10. 13.자 67마530 결		
	정).		
	·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		
	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결정에 터 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서만 다툴 수 있음(대법원 1977. 11.		
	접근 법권구자의 접행군구역에 대한 이의도시한 다물 구 있음(대법권 1977, 11. ] 23.자 77마348 결정).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을 다시 이의 ]		
	사유로 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은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과 마		
	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.		
	・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	-(현행 민사집행법	제28조 제2항)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
	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		
	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,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		
	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		
	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, 따라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		
	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		
	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(대법원 2000. 3. 13.자 99마7096 결정). 이 때는 소송기		
	록이 송부된 상급심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함.		
	반면에 제1심에서 집행문 부여가 된 경우(거절된 경우가 아님)에 집행문 부여에		
	대한 이의신청은 기록이 상급심에 있어도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		
	속인 제1심 법원에 하여야 함(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).		
	·화해조항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〇〇〇원을 〇〇〇〇년 〇월		
	○일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		
	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원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동시이 해고계에 이는 거으로 그 스전이 기이의 이 싸바케므이 이해기라고 보이 사다침.		
	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소정의 기일은 위 쌍방채무의 이행기라고 봄이 상당하		
	고 따라서 쌍방이 위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존 속한다 할 것이어서 기한도과 후 신청인이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서로		
	역인다 될 것이에서 기인도와 후 선정인에 뒤 급원들 중턱하였다면 그 중턱시도 써 위 화해조항 소정의 반대급부의 이행은 증명되는 것임(대법원 1974. 12. 11.		
	자 73마969 결정).		5 5-1C A D(-11 d d 1014, 12, 11,
	1 1 10 1000 E 0/1		